

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3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석규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의거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·수탁 협약종료(2016.2.1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

나. 추진 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 2. 12 ~ 2019. 2. 11(3년간)
- 수탁기관 : 의료기관
 - ※ 現 수탁기관 : (의)참사랑재단 / 2013.2.12.~2016.2.11.(3년간)
- 수탁방법 : 공모선정
- 위탁사무 : 독립노인병원 시설물 관리 및 병원운영
 -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, 요양
 -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
 - 기타 노인·치매환자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등
- **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일정**
 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5. 12월
 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공고 : '16. 1월
 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'16. 1월
 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심의·선정 : '16. 1월
 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2월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본 동의안은 **충북도립전문병원**이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6.2.12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자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함.
-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독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, 병원의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인 바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, 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위수탁과 관련해,
 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2월 한국병원(인화재단)에서 최초 위탁해 운영해 오다가 2006년 12월 수탁운영을 포기한 이후,
 -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3회에 걸쳐 (의)참사랑재단이 지속적으로 수탁을 받았는데,
 - 참사랑재단에 계속 수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충부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 계획안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

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하는 충북도립전문병원이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6.2.12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는 계획임.

1 관련 근거

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위탁기간 10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
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6조
 - 수탁기관 선정 시 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 심의 의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-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

2 그 간 위·수탁 추진현황

- 2001. 2. 12. 한국병원(인화재단) 위·수탁 계약체결
 - 위탁기간 2001. 2. 12 ~ 2011. 2. 11
- 2006. 12. 12. 한국병원 수탁운영 포기
- 2007. 2. 12. (의)참사랑재단 위·수탁 계약체결(공모)
 - 위탁기간 2007 2. 12 ~ 2010 2. 11
- 2010. 2. 9. (의)참사랑재단 위·수탁 계약체결(공모)
 - 위탁기간 2010 2. 12 ~ 2013 2. 11
- 2013. 2. 8. (의)참사랑재단 위·수탁 계약체결(공모)
 - 위탁기간 2013 2. 12 ~ 2016 2. 11

3**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위·수탁 현황**

- 수탁기간 : 2013. 2. 12 ~ 2016. 2. 11(3년간)
- 수탁기관 : (의)참사랑재단(이사장 : 최정봉)
-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(미평동)
- 규 모 : 건물 3,540㎡(지하2층, 지상5층), 149병상
- 위 탁 비 : 없음
- 위탁사무 : 독립병원시설물 관리 및 병원운영
 -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.요양
 -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
 - 기타 노인.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

4**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탁 추진 일정**

- 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5. 10월
- ②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5. 12월
 - 위탁방법, 위탁기간,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
-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'16. 1월
 - 구성인원 : 7명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 - 당 연 직 : 3명(기획관리실장, 안전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
 - 위 촉 직 : 4명(도의원 1, 외부전문가 3)

- ④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공고 : '16. 1월

⑤ 수탁기관 심의·선정 : '16. 1월

○ 심의사항 : 수탁자의 적격성, 사업수행능력, 재정운영 등 평가

○ 운영방식 : 현장(필요시) 및 서면평가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
⑥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2월

<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협약(안) >

○ 기 간 : 2016. 2. 12 ~ 2019. 2. 11(3년간)

○ 규 모 : 건물 3,540㎡(지하2층, 지상5층)

○ 위탁비 : 없음

관련법령 발취

■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운영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계약이 끝난 후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2. 9>

1. 의료법인(단,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)
2.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01. 2. 9>

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 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2. 9>

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·구입장비 승인등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,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.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, 제6조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3. 27>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5. 3. 27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 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